

## ❖ 정부시책 ❖

## '97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정부는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를 1% 인하하는 한편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지원지침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지원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융자금리를 지난해의 7%에서 올해에는 6%

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과제별 지원한도액(시제품 20억원, 첨단기술제품 10억원)을 30억원까지 확대해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계류 등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내개발을 실효성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는 우수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기술(제품)개발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주요 개정내용

| 항 목                             | '96 시 행                        | '97 계획   |
|---------------------------------|--------------------------------|--|
| • 지원규모<br>- 시제품개발<br>- 첨단기술제품개발 | • 2,545억원<br>(2,000)<br>( 545) | • 2,927억원<br>(2,300)<br>( 627)                     |
| • 융자대상                          | • 기술 및 제품개발                    | • 핵심자본재 등 제품개발<br>• 기술(제품)개발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지원 |
| • 융자조건<br>- 대출금리<br>- 과제당한도액    | 7%<br>시제품 : 20억원, 첨단 : 10억원    | 6%<br>시제품 : 첨단 구분없이 30억원                           |
| • 융자취급기관<br>- 시제품개발             |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등 7개기관              | • 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추가하여 8개기관                             |

또 자금취급기관의 확대를 위해 정밀화학 공업진흥회를 시제품개발 용자금 취급기관으로 확대했다.

한편 산업기술개발 용자사업의 지원규모는

지난해의 2,545억원에서 올해에는 2,927억 원으로 확대되며 이중 시제품 개발은 2천억 원에서 2,300억원으로, 첨단기술제품개발은 545억원에서 627억원으로 확대된다.

## '97 산업기반기금 지원계획 공고

통산산업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균형 발전, 환경·유통 등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도 산업기반기금의 지원액을 3,211 억원으로 확정했다.

통상산업부의 '97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분야별 지원규모는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에 1,765억원, 유통 합리화사업에 814억원, 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사업에 452억원, 제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에 18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통산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집약형 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기술담보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산업기반기금의 지원으로 신발·섬유·생활용품 등 경쟁력 약화산업의 노후시설 개체를 포함한 합리화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물류·환경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엔지니어링산업·CALS(광속전자상거래) 등 제조업의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총 용자규모가 3,211 억원으로 지난해 지원액 4,434억원보다 줄어든 이유는 WTO체제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작년 용자 규모 3,150억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라며 "타 사업부문의 용자규모를 늘리는 한편 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사업 및 제조업기반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원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 가치산업의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신발·섬유·금형·용접·센서·생활용품산업 등의 시설개체비, 공장집단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디자인개발을 중점 지원하며 유통합리화사업은 유통기업의 협동화, 공동집배송단지건립, 물류표준화, 집배송센터 건립 및 업종별 공동물류정보망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사업은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설비투자, 환경설비산업 육성을, 제조업지원기반 구축사업은 생산·조달·운용지원·통합정보 시스템인

CALS체계 도입 및 구축, 엔지니어링·영상 산업을 중점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기술담보사업은 기술 집약형 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키 위한 것으로 실물담보없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담보로 지원하고 대출기업의 부도 등으로 응자금 회

수가 불가능할 때는 손실액의 일정비율을 이 기금에서 보전키로 했다.

한편 담보기술의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취급은행으로는 종합기술금융과 중소기업은행이 지정될 예정이다.

##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선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의 확대,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개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통신부는 올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액을 지난해 1,297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하며 과제당 평균지원금액도 예년의 연간 1.2억원에서 올해에는 최고 3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기간을 종전의 1~3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 신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경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초기 단계에서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신산업기술(Emerging Technology) 및 원천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없이 연구소 등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업무수행을 가능토록 했으며 동일한 기술과제라도 관련산업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성이 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연구에 의한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부는 연구개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18.45~35.4% 인상하는 한편 기술개발사업 완료후 정부에 상환해야 할 기술료도 50% 이하로 경감하되 기반성격이 강한 기술이거나 기술개발후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기술료 징수를 종전의 50% 일률적용에서 면제키로 했다.

정부가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개발사업등에 재투자 또는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지원하며 공기반사업 결과로 획득한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기술담보사업용 기금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종료후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는 과제는 실패사업으로 간주, 참여제한조치 등 제재를 가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제가 누적될 경우에 한해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개발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평가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대표가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토록 한 것을 기업부설 연구소와 직접 협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위탁기관의 사업비변경을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 '97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공고

금년도 품질경영상은 기업체부문, 개인 및 단체부문, 유공자포상부문으로 구분하며 기업체부문에서는 공기업을 별도로 구분, 포상 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11월 개최예정인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포상할 금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을 공고했다.

이번 포상요령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품질 경영 촉진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외에 공기업을 별

도로 구분하여 포상하고 그룹별·산업별·조합별로 구성되어 있는 품질경영추진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을 신설했다.

한편 품질경영상 수상업체는 수상후 6개월 이내에 품질경영추진사례를 발표해야 하며 통상산업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경영 강사위촉, 사후관리 면제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